

## V.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 1. 보상한도와 적립목표액의 추정

#### 가.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예금보험기금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보상한도를 목표 적립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연도말 보험계약자별 해약식준비금 현황, 연간 보험금 지급 실적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뢰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통계의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급 이상이 작성토록 하였다. 분석 대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5개사(대형사 1개사, 중소형사 4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대형사 3개사, 중소형사 3개사) 등 총 11개 보험사로<sup>67)</sup> 이루어졌다(<표 V-1> 참조).

< 표 V-1 >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내 용	특 징
분석대상	11개 보험사 - 생보 5개사, 손보 6개사	전체 보험사 대상 의뢰
조사기간	2005.7~2005.8 (약 2개월)	-
자료형태	연별(연도말 또는 연간) 데이터	3가지 형태의 DB자료
작 성 자	관련 책임자급 이상	보험사 기획부 경유

먼저, 손해보험사들과 생명보험사들의 연별 데이터들을 각각 합산한 통계를 손해보험권과 생명보험권 각각의 전체 시장 데이터로 의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보험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외환위기 이후 안정기

67) 대형사의 기준은 생보사 상위 3개사 기준, 손보사는 상위 5개사 기준임.

에 있으므로 현재의 환급금 분포나 보험금 지급 분포가 향후 수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환급금 데이터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별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으로 구성되었다. 보험금 데이터는 만기환급금을 제외한 사망, 후유장애, 질병 등의 순수한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구성되었다.

< 표 V-2 > 보상한도의 추정방법

시나리오	환급금 기준 한도 추정	보험금 기준 한도 추정
데이터	GDP대비 비율	
	환급금 구성 분석	지급보험금 구성 분석
분석	- 계약자 구성비와 금액 구성 비별 보상수준 선택 분석	- 계약자 구성비와 금액 구성 비별 보상수준 선택 분석

보상한도 추정을 위한 분석은 시나리오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별 분석은 ①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한 나라들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한 해약환급금 한도의 추정, ② 은행권 기준에 상응하는 환급금 기준의 한도 추정, ③ 지급보험금 기준의 한도 추정 등으로 이루어졌다(<표IV-2>참조). 즉, 시나리오별 분석의 1단계는 해약환급금 한도의 조정 단계이며, 제2단계는 지급보험금 한도의 조정 단계로 1단계와 2단계는 독립적인 단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기금의 적정 적립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상 한도 추정과 동일하게 시나리오별 분석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① 과거 보험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액 등을 적립기금의 적정 규모로 추정하는 방법, ② 보험사 환급금 데이터를 고려한 적립기금의 추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적립기금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제II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권 특성을 반영하는 기금규

모는 은행권과 달리 최소한의 기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여러 시나리오들 중 최소기금을 대안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적립규모의 추정 결과는 향후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담, 기금의 보험료 차등의 적용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경우만 단순히 적용하는 것보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정합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은 시나리오별 결과를 도출한 후에 어느 정도의 적립기금이 국내 현실상 바람직한 가를 범주별로 제시하는 단계를 거쳤다(<표 V-3>참조).

< 표 V-3 > 목표기금의 추정방법

시나리오	과거 실적 기준 규모 추정	헤지율 기준 규모 추정
데이터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실적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 실적
분석	- 평균적 적립기금 규모 산정	- 평균적 적립기금 규모 산정

#### 나. 적정 보상한도의 추정

##### (1) 1인당 GDP 대비 보상한도 비율

OECD국가 중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보상비율을 산출한 결과,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비율이 2.4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sup>68)</sup>, 국내 예금보험기금의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3.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4>참조).

68) GDP 대비 보상비율과 관련하여 환급금에 상응하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기금의 보상한도에 대한 IMF의 권고사항은 1인당 GDP 대비 1배~2배임. 예금보험공사 (2000), p.6.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OECD 보호기금들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수준은 약 3,6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현행 5000만원이라는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V-4 > 1인당 GDP 대비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국가	환급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
	최고한도	달러환산(A)		
미국	USD 100,000	100,000	37,368	2.68
캐나다	CAD 60,000	42,857	23,536	1.82
프랑스	EUR 70,000	79,096	29,240	2.70
OECD	평균 (최고한도 기준)			<b>2.40</b>
한국	5,000만원	41,950	12,628	<b>3.32</b>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캐나다의 GDP는 2002년 기준

다른 한편으로, OECD 회원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을 보면, ① 최고한도만 설정되어 있는 국가는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이 약 5.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최고한도만 설정되어 있는 기금뿐만 아니라 보험금보상 한도에 비율까지도 고려한 경우,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이 약 7.2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V-5> 참조). 따라서 최고한도만을 적용하여 보험금보상 한도를 추정하여 보면, 약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고한도뿐만 아니라 부분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가 약 1억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기금의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는 OECD의 기금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V-5 > 1인당 GDP 대비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국가	보험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
	최고한도	비율보상	달러환산(A)		
미국	USD 300,000	-	300,000	37,368	8.03
캐나다	CAD 200,000	-	142,857	23,536	6.07
프랑스	EUR 70,000	-	79,096	29,240	2.70
소계	평균 (최고한도 기준)				<b>5.60</b>
아일랜드	IRL 650,000	65%	606,175	37,639	16.10
폴란드	EUR 30,000	50%	16,949	4,894	3.46
영국	무제한	90%	-	-	-
일본	무제한	90%	-	-	-
전체	평균 (비율보상 포함)				<b>7.27</b>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캐나다의 GDP는 2002년 기준

따라서 국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의 보상한도 조정과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증대를 고려하여 보험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환급금 기준 적정 보상한도 추정

환급금 기준으로 금액계층별 보험계약자의 비율과 금액을 살펴보면 (<표 V-6> 참조), 보험권의 분포는 은행권의 분포와 대조적으로 2,000만원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보상한도 5000만원은 생명보험에서 전체 계약자의 99.8%, 금액으로는 전체 환급금의 95.1%까지 지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99.9%의 계약자와 93.1%의 환급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권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sup>69)</sup>, 현재의 환급금

69) 예금보험공사(2000) 참조.

수준의 보상한도는 사실상 완전보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V-6 > 보험권과 은행권의 금액계층별 소비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계약자	환급금	계약자	환급금	예금자	예금잔고
2천만원 이하	98.7	84.3	99.2	82.8	96.6	24.2
3천만원 이하	0.9 (99.6)	7.2 (91.5)	0.5 (99.7)	6.0 (88.8)	2.2 (98.8)	9.4 (33.6)
5천만원 이하	0.2 (99.8)	3.6 (95.1)	0.2 (99.9)	4.3 (93.1)	0.6 (99.4)	5.7 (39.3)
5천만원 초과	0.2 (100.0)	4.9 (100.0)	0.1 (100.0)	6.9 (100.0)	0.7 (100.0)	60.7 (100.0)

주: 1.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준, 보험권은 FY2004 기준.

2. ( )은 누적 비율임.

자료: 보험권은 11개 보험사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은행권은 예금보험공사(2000).

이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부분보장 전환에 대비하여 제시한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공사는 IMF의 권고 수준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기관 예금자별 예금잔고 데이터를 기초로 2,000만원의 보상한도를 제시한 바 있다. 2,000만원은 전체 예금자의 99% 내외의 보호와 IMF의 권고수준인 1인당 GDP의 1~2배를 근거로 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준용할 때, 보험권의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보상한도가 2,000만원일 경우 생명보험에서 전체 계약자의 98.7%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대상 금액의 84.3%까지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00만원의 보상한도 수준은 전체 계약자의 99.2%가 보호받고, 전체 금액의

82.8%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2,000만원이 적절한 보상한도라고 판단된다.

< 표 V-7 > 지급보험금의 계약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자	보험금	계약자	보험금
2천만원 이하	97.7	58.2	98.9	59.9
3천만원 이하	1.0 (98.7)	8.7 (66.9)	0.4 (99.3)	7.7 (67.6)
4천만원 이하	0.3 (99.0)	4.7 (71.6)	0.2 (99.5)	6.0 (73.6)
5천만원 이하	0.3 (99.3)	4.8 (76.4)	0.2 (99.7)	5.3 (78.9)
8천만원 이하	0.4 (99.7)	8.8 (85.2)	0.2 (99.9)	17.0 (86.6)
9천만원 이하	0.0 (99.7)	0.9 (86.1)	0.0 (99.9)	2.0 (88.6)
1억원 이하	0.1 (99.8)	4.0 (90.1)	0.0 (99.9)	5.0 (90.5)
1억원 초과	0.2 (100.0)	9.9 (100.0)	0.1 (100.0)	4.5 (100.0)

주: 1. FY2004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금액계층별로 나눈 것임

2.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누적건수와 누적금액의 비율을 의미.

자료: 11개 보험사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그러나 보험권 보상한도의 상한(ceiling)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금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한 특정 기간 동안에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환급금을 받을 유사 예금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한 본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보험금 보장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 본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은 최저 8천4백만원에서 최고 1억1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준에 따를 때,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99.7%~99.8%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의 85.2%~90.1%를 보상하는 수준이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99.9%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의 대략 86.6%~90.1%를 보상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80%~90%의 비율보상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기금들과 비교해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나. 적립목표액의 추정

##### (1) 해지율을 이용한 목표기금 규모 추정

기금의 적립목표액을 급격한 해지율 상승에 따른 유동성 대비 자금의 규모로 설정할 경우, 해지율에 상응하는 유동성 자금과 이와는 무관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정상적인 보험금 규모를 추정하여 적정 목표기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① 환급금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규모를 추정한 후, ② 환급금과 보험금지급의 합계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목표기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지급여력 부족 또는 부실지정 보험사의 해지율과 정상 보험사의 해지율 자료(<표 V-10> 참조)를 기초로 하여 외환위기 직후의 최악의 해지율을 기금 규모를 추정하는 해지율로 사용하였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선정된 해지율 시나리오에 의해 ① 환급금만을 고려하여 목표기금을 추정한 결과(<표 IV-8>참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최소 3,386억원에서 최대 6,772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최소 2,170억원



에서 최대 5,424억원의 기금규모가 추정되었다. 한편, ② 환급금과 보험금을 모두 고려할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3,856억원에서 최대 7,712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산출되었으며,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2,640억원에서 최대 6,364억원의 기금규모가 추정되었다.

< 표 V-8 > 생명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해지율 시나리오	환급금 ①		환급금 + 보험금 ②	
	Max	Min	Max	Min
지급불능 2개사 이하	3,386	2,170	3,856	2,640
지급불능 3개사 이하	5,079	3,245	5,784	3,959
지급불능 4개사 이하	6,772	5,424	7,712	6,364

- 주: 1. MAX는 외환위기 직후 부실사 해지율(36.1%) 반영.  
 2. MIN은 외환위기 직후 건전사 해지율(28.9%) 반영.  
 3. 목표기금의 규모는 중소형사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산출.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해지율 시나리오에 의해 목표기금을 추정한 결과(<표 V-9>참조), ① 해약환급금만을 고려하는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568억원에서 최대 1,136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②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455억원에서 최대 910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되었다. 한편 ②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480억원에서 최대 2,960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367억원에서 최대 2,735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기금 규모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보다 많은 목표기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V-9 > 손해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해지율 시나리오	환급금 ①		환급금 + 보험금 ②	
	Max	Min	Max	Min
지급불능 2개사 이하	568	455	1,480	1,367
지급불능 3개사 이하	852	683	2,220	2,006
지급불능 4개사 이하	1,136	910	2,960	2,735

- 주: 1. MAX는 외환위기 직후 부실사 해지율(36.1%) 반영.  
 2. MIN은 외환위기 직후 건전사 해지율(28.9%) 반영.  
 3. 목표기금의 규모는 중소형사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산출.

< 표 V-10 > 외환위기 이후 보험시장 해지율 추이

해지율	생명보험시장 평균	비 고
1999. 6	30.9%	부실사 36.1% / 건전사 28.9%
1999. 9	25.0%	
1999.12	25.7%	
2000. 3	20.5%	
2001. 3	27.1%	
2002. 3	22.1%	
2003. 3	14.8%	
2004. 3	16.2%	
2005. 3	14.2%	손해보험 16.0%

(2) 구조조정 소요자금 기준 목표기금 규모 추정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보험회사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된 총 구조조정자금은 9조1,327억원이며, 이중 8조7,691억원(45.2%)은 생명보험사에, 3,636억원(1.9%)은 손해보험사(보증보험사 제외)에 각각 투입되었다. 이외에 10조 2,500억원의 자금이 예금보험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닌 보증보험사에 긴급조치를 통해 투입되었다(<표 V-11> 참조).

< 표 V-11 > 기금의 부실보험사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보험권			보증	계	손실 분포
	생명보험	손해보험	소계			
2001년 이전	85,653	381	86,034	102,500	188,534	94.2%
2002년	-	869	869	-	869	1.0%
2003년	1714	2,386	4,100	-	4,100	4.5%
2004년	324	-	324	-	324	0.3%
합계	87,691	3,636	91,327	102,500	193,827	100.0%

주: 예금보험공사(2005), p. 25를 기초로 작성.

2001년까지 보험회사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건전성 중시의 감독정책 영향으로 보험시장의 부실규모는 전체 부실규모의 5% 이내로 급감하고 있다. 전체 부실규모 분포를 추정하여 보면, 2001년 이전에 94.2%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에는 1.0%, 2003년에는 4.5%의 분포를 보이는 등 보험시장의 환경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의 보험시장의 부실규모는 거의 0에 가까운 0.3%(324억원)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 결과는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의 목표기금액은 최소 5,400억원에서 최대 1조80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손해보험의 목표기금액은 최소 2,424억원에서 최대 4,84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개사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약 5,400억원, 손해보험사는 2,424억원의 목표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V-12 > 구조조정에 필요한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구조조정 실적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급불능 2개사 이하	5,400	2,424
지급불능 3개사 이하	8,100	3,636
지급불능 4개사 이하	10,800	4,848

주: 구조조정 실적 중 대형사 구조조정 실적은 제외하고 산출된 것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결과들을 도출함에 있어서 4개 미만의 보험사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 규모에서도 중소형 보험사의 지급불능을 가정하여 목표기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과거의 전례로 보아 초대형 보험사의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금만으로 파산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외환위기와 같이 감독규제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급불능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셋째, 최소기금 규모로 2개사 미만의 지급불능에 대처할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해외 사례. 넷째, 보험시장의 부실 보험사 분포, 마지막으로 모형에 의한 기금추정은 아직 데이터와 가정에서 해결할 사항이 많음을 고려했다.

## 2.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 가. 보험계약자 보상한도의 이원화

보상한도 분석 결과, 5000만원의 보상한도는 해약환급금 기준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반면, 보험금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높이는 이원화 방향으로 보상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V-13> 보상한도 조정안

구 분	해약환급금	보험금	비 고
현 행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 - 도덕적 해이 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한도 (전액보상)	2000만원 + 초과분× 90% (한도: 무제한)	- 소액 계약자 보호 증점 - 고액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제2안	보험금(해약환급금포함)의 90% (한도: 무제한)		- 전계약자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따라서 두 가지 보상한도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다(<표IV-13>참조), 제1안은 모든 일반 계약자에게 2000만원까지 전액을 보상하고,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부분보상을 통해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2안은 전액보상의 최저한도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무제한으로 90%의 부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계약자에게 부실한 보험사를 선택한 책임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어느 기준이든 현행 5,000만원 보상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

기금적립에서는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은 2개사가 파산하였을 때 필요한 지원액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따라서 목표기금의 규모는 생명보험의 경우 최소 3,856억원에서 최대 5,400억원, 손해보험의 경우 최소 1,480억원에서 최대 2,424억원이 적정하다고 본다. 보험권 전체로는 최소 5,336억원에서 최대 7,824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4>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의 설정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전체
제1안	5,400억원	2,424억원	7,824억원
제2안	3,856억원	1,480억원	5,336억원

제1안과 제2안을 비교할 때, 보다 현실적인 안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제1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5,400억원, 손해보험은 2,424억원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본다. 제2안의 경우에는 해지율을 고려한 유동성 부족에 대응한 규모를 추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1안에 비해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의 목표기금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의 목표기금은

약 1,480억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기금의 배분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복수기금제의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근본적인 토대는 기금분리 원칙의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다른 기금과의 관계나 다른 기금의 지급능력 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보상한도 조정이나 적립규모 설정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기금 방식의 기금 운영에서 오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 표 V-15 > 단일기금과 복수기금의 비교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기금 유동성	+	-	금융기관 차등화	-	+
산업연계성 강화	-	+	시장변화 대응	-	+
상호보조 방지	-	+	경쟁 촉진	-	+
금융권 분쟁축소	-	+	관리/차입비용 절감	+	-

주: 비교우위: “+”, 비교열위: “-”를 나타냄.  
 자료: 김대식 등(2004b), p.164를 일부 수정.

실제로 예금보험기금은 통합 이후 줄곧 금융권간 여러 기금들 간의 형평성에 매달려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기금의 유동성은 커질 수 있어도 보험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과 보험산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환기금에서 나타난 상호보조의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일기금방식의 운영에서 촉발된 보험요율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할 목표기금제나 보험료차등화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데 복수기금에 비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단일 관리주체의 통합기금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금융권별 기금 운영은 개별 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금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복수기금제의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